

불참자처리 세칙

2007년 1월 29일 제정 2010년 12월 15일 개정 2018년 1월 9일 개정 2019년 3월 20일 개정
2022년 3월 30일 개정 2022년 5월 31일 개정 2024년 3월 21일 개정

현행안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칙</p> <p>제1조 (명칭) 본 세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위아지회(조합, 지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침과 집회 및 교육, 각종 행사에 대하여 무단으로 불참한 조합원 및 간부를 처리하기 위해 정한 현대위아지회(이하 “지회”) 불참자 처리 세칙이라 한다.</p> <p>제2조 (목적) 본 세칙은 규칙 제10조(의무)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게끔 유도하여 전체 조합원의 형평을 유지함으로 총회 및 쟁의행위 시 전 조합원의 참여와 단결을 통한 조합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 (적용범위) 본 세칙은 전 조합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p> <p>제4조 (적용기간) 본 세칙의 적용기간은 1년(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되, 대의원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처리내역</p> <p>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p>	

현행안	개정안
<p>제6조 (처리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9회(쟁의시6회)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u>피선거권을</u> 1년간 제한한다. 12회(쟁의시7회)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u>처리한다.</u>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p>제7조 (처리대상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단협에 의한 경조휴가 및 공민권 행사 해당자 출장자, 공상, 산재, 휴직, 예비군, 민방위 대상자 천재지변 등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자 연월차 휴가자 각종 회의 참석 대상자 중 2조 (심야) 근무자 및 파견대의원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부 칙</p> <p>제8조 (시행) 본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9조 (제정과 개정) 본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대의원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참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p> <p>제10조 (유권해석) 본 세칙의 미비한 점은 대의원회의 유권해석 결의에 따른다.</p>	<p>제6조 (처리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회(쟁의시6회)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을 1년간 제한한다. 12회(쟁의시7회)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를 <u>요구한다.</u>